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4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맹성규 · 문진석 · 이연희
복기왕 · 김영호 · 장철민
박용갑 · 김기표 · 신영대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 정비업 · 공항운영자 · 교육기관 ·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제작증명을 받은 당시의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 등을 추가(안 제20조제8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제6항).
- 나.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대상에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제외(안 제38조제4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관련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159조).
-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 확대 등(안 제48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대상에 “자격증명의 한정” 및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도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 대상으로 포함.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급하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원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에 유효기간(또는 유효성 검사)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8조제12항부터 제14

항까지,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0조제11항, 제97조제4항
· 제6항 · 제7항).

바.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자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규정(안 제58조제2항 · 제8항 · 제9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사실조사 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대상, 세부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60조제5항).

아. 비행 중인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에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비행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 및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67조의2).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안 제89조제3항 · 제5항).

차. 항공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질병·자연재해·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 신설(안 제132조의2 및 제163조의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받으려는 자”를 “을 받으려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4.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와 계약을 통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제22조제2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및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각각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8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의 비행시간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에 따른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제44조제2항제2호 중 “종류”를 “종류·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이 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 연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 본문 중 “양성하려”를 “양성(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과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또는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호 및 제7호의2”를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로, “자는”을 “자(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의 명단을 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개시 및 종료일 기준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지정하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지정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에 위치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⑬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양성교육을 계속 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제10항”을 “제4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 입과자 및 수료자의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의2. 전문교육기관에 속한 조종사 또는 교육에 입과한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 중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를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와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의 법인·단체 등은 그가 속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제5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
- 1의2.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를 “제4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을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97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비행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범죄 또는”을 “다만,”으로, “위반행위가”를 “위반행위 또는 중과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승인기준 및”을 “승인 및 변경 승인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단체·법인 등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정에 관한 기준

⑧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지정·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8항에서 승인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운용 실태에 대한 수시·정기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수시·정기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안전증명이 만료·정지·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만료·정지·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항공기의 요격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격추 등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요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칙 및 절차를 따른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⑪ 항공교통업무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⑫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86조제1항제2호”를 “제86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측정단위”를 “측정단위, 항공정보·지도 자료의 수집”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 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제6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운항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분석 및 분석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2.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3.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료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조제1항에 제3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9의3. 제9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7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제5항에 따른 변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 대한민국 외에 위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⑤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받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⑥ 정비조직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⑦ 정비조직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정비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0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항증명승인을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04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제1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량항공기의 요격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적용의 면제·예외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예외가 항공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공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제159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중전의 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제67조의2”로 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가 비행시간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적용의 면제·예외 위반의 죄) ①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항공기 운항, 항공업무 등에 따른 사항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제132조의2의 면제·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7조의2·제87조·제98조·제114조·제121조·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85조·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제58조제8항에 따른 안전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증명·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법인 등은 이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효성 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생략)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58조제2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u>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u>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u>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u>

<신 설>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작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을 받으려는 경우에---

-----.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 설>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4.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와 계약을 통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② -----

-----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신 설></u>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	<u>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u> <u>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u> <u>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u> <u>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u> <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u>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 6. (생략)

⑤ (생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38조의3(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및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

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

-----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② -----
-----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
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
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
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
(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
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
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
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
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의2. ~ 11.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
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
소 등)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운항

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

문항공교통관제사----

8의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 21. (생 략)

<신 설>

22. ~ 31.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제37조

11의2. 제48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의 비행시간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12. ~ 21. (현행과 같음)

21의2. 제67조의2제3항에 따른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규칙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2. ~ 3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라 한정을 받은 종류 외
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신 설>

③·④ (생 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
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
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종류·등
급 -----

3.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이 항에 따른 조종교육증
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
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 연습

③·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양성(제37조제
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과
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또는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
원 전문교육기관-----
----- 제7
호, 제7호의2 및 제8호-----
----- 자(제90
조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
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
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는 ---.

② ~ ⑥ (생 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
-----.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의 명단을
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
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개시 및 종료일 기준 1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
에 따른 유효기간을 지정하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훈련운
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
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지
정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전문
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에 위치한 전문

<신 설>

<신 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교육기관: 2년

⑬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양성교육을 계속 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4. 정당한 사유 없이 <u>제48조제10항</u>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u>달성 목표 및 조직체계</u> 2. <u>항공안전 위협도의 관리</u>	<u>교육과정 입과자 및 수료자의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u> 4. ----- <u>제48조제11항</u>----- -----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전문교육기관에 속한 조종사 또는 교육에 입과한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 ----- ----- -----. 1. ----- <u>달성 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u> 2. <u>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위협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u>
--	---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 항

3. 항공안전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 · 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 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② -----
-----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와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

----- . -----

----- . 다만, 외국의 법
인·단체 등은 그가 속한 국가
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
안전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1. <u>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u> <u><신 설></u> 2. 제35조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 4. (생 략) 5. <u>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u> 6. (생 략) 7. 「<u>공항시설법</u>」 제43조제2항에 따라 <u>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u> 8. 제55조제2호에 따른 <u>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u> ③ (생 략)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	1. 제20조에 따른 <u>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u> 1의2. <u>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u> 2. ----- <u>제4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실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3. 4. (현행과 같음) 5. <u>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97조-----</u>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illegible]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
행자료-----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illegible]

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

⑦ -----

---.

1. (현행과 같음)

2. -----

----- 승인

및 변경승인 기준, -----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

의 단체·법인 등에 대한 항

공안전관리시스템 인정에 관

한 기준

3. ----- 항

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 및 -----

⑧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

지정·인증 등(이하 “안전증명”

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

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

<신 설>

<신 설>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8항에서 승인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의 유지 및 운용 실태
에 대한 수시·정기 검사를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
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수시·정
기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⑩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승인받은 항공안
전관리시스템의 효력이 정지 또
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안전증명이 만료·정지·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항공안전
관리시스템도 만료·정지·취
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
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
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제60조(사실조사) ① ~ ④ (생
략)

<신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경우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업무-----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사실조사)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처분
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
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
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항공기의 요격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
인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격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생략)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

추 등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요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칙 및 절차를 따른다.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
 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
 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② (생략)

<신설>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 제86조제1

항제1호의2-----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 자료”라 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
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
·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신설>

요청하는 항공정보·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까지-----

----- 측정단위, 항공정보·지도 자료의 수집 -----
-----.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운항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한

<신 설>

<신 설>

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분석 및 분석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2.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3.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료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9의 2. (생략)

<신 설>

40. ~ 49. (생략)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sists of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first row contains a small black dot at the beginning,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except for the dashed lines.

1. ~ 39의 2. (현행과 같음)

39의3. 제90조제11항을 위반하
여 운항증명을 타인에게 양도
하였거나, 단서에 따른 운항증
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받
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 ~ 49.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정비조직으로 인증을 받은

<신 설>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자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정비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

-----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어느 하나-----
-----.

1. ~ 5. (현행과 같음)

6.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한

<신 설>

② (생 략)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에 대하여

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항증명승인을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등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신 설>

14. ~ 17. (생략)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 등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
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
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
하고 비행한 경우

14. ~ 1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
규정)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
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경량항공기의 요격에 관하여
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제132조의2(적용의 면제·예외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
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
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
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항
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
용 보다 면제·예외가 항공안
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
는 경우

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예외를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공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u>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 내야 한다. 1. ~ 19. (생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136조(수수료 등) ① ----- ----- ----- -----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 39. (생 략)

② (생 략)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생 략)

②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19의2.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20. ~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48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입과한 자가 비행시간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1의2. -----
-- 제외한다), 제67조의2---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3(적용의 면제·예외 위반의 죄) ①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항공기 운항, 항공업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u>항공교통관제사</u>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 15. (생략) ② ~ ⑦ (생략)	<u>무 등에 따른 사항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u> <u>② 제132조의2의 면제·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66조(과태료) ① ----- ----- ----- ---. 1. ----- <u>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u> ----- ----- ----- 1의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